

# 서울대학교 교원 창업을 위한 가이드북

[2023년 개정판]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교원 창업을 위한 가이드북 [2023년 개정판]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교원 창업을 위한  
가이드북

[2023년 개정판]

Part 1

**창업 준비단계**

- 01 창업에 대한 개요 05
- 02 교원 창업 절차 08
- 03 교원 창업 시 유의사항 09

Part 2

**창업 신청단계**

- 04 창업승인신청서 작성 19
- 05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27
- 06 서울대기술지주회사 안내 37

Part 3

**기업 설립 및 운영단계**

- 07 법인 설립 43
- 08 벤처기업 확인 신청 45
- 09 대학 창업공간 활용 48
- 10 대학 창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50
- 별첨 60

Part 1

# 창업 준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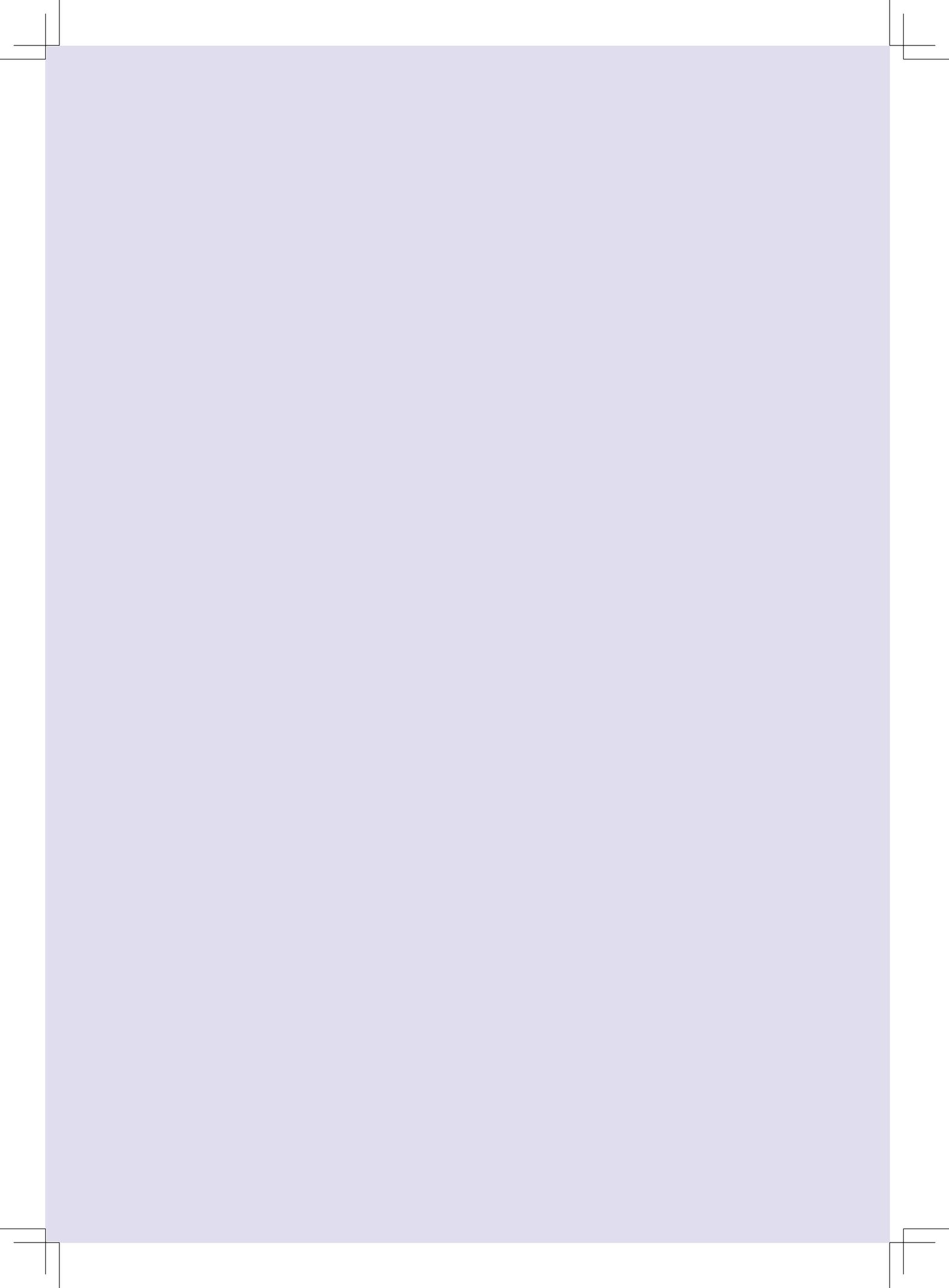
01 창업에 대한 개요

02 교원 창업 절차

03 교원 창업 시 유의사항



창업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창업에 대한 이해와  
교원 창업 시 준비 절차,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01

# 창업에 대한 개요



## ✔ 기업가정신

- 기업가정신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었으며, 보통 **‘새로운 도전과 혁신 활동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슐페터: 기업가정신을 혁신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가의 재능 또는 역량으로 기업가는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혁신가, 즉 창조적 파괴자라고 정의
  - 피터드러커: 기업가란 변화를 탐색하고 새로운 기회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며 이를 기업가정신이라고 할 수 있음
  - 티몬스: 가치있는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행동으로 현재 자원의 부족을 감수하여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열정과 헌신, 계산된 위험성을 감수하는 의지를 필요로 함
- 국가별 기업가정신 수준을 진단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 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상위권에 속하는 등 창업기업의 혁신, 도전정신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 대학의 시대적 변화와 기업가적 대학의 등장

-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역할뿐만 아니라 연구결과물을 통한 창업지원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 받고 있음
- 기업가적 대학 패러다임의 등장은 산학협력 및 다학제·융복합 기초연구를 통한 기업으로의 원천기술 이전, 지역 및 국가경제의 기여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오고있음
- 대학은 혁신 기술과 인력의 보고로 창업생태계의 한 축이 될 수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대학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교원 및 구성원 등이 적극적으로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음

※ 실리콘밸리(미국),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미국), 중관춘(중국), 실리콘 펜(영국), 시스타 사이언스파크(스웨덴) 등의 창업, 산학연 클러스터에서 대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창업이란?

- 영리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의 형태에 따라 일반창업, 기술창업, 벤처창업이 있으며 대학 실험실 보유 기술의 창업(사업화)을 실험실창업으로 별도로 구분

## ✔ 창업형태에 따른 분류

- **기술창업**: 혁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여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형태의 창업으로 대학에서는 직무발명으로 인한 학교 보유의 기술을 활용하는 형태의 창업이라 정의할 수 있음
  - 직무발명으로 인한 학교 보유의 기술 활용 시 반드시 창업기업으로 기술이전이 필요
- **벤처창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
  - 창업 후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등 유형을 확인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를 통해 벤처기업 인증 신청
- **실험실창업**: 정부, 민간의 R&D 지원을 통해 대학 실험실이 보유한 연구성과와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 산학협력단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실험실 기술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
- 우리대학에서는 창업심의 시 교원의 연구성과물(특허, 노하우 등 지식재산권) 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크고 본교 및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극 지원 및 투자 대상기업으로 추천하고 있음
  -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가이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등

## ✔ 교원 창업

- 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나 임원, 지분 참여 등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함
- 대학 및 대학과 연계한 지원 제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교원 창업기업이 늘어나고 있음(IPO를 달성한 교원 창업기업의 증가, 연구성과물을 활용하여 시리즈별 많은 투자를 받는 교원 창업기업의 등장, 성공적인 Exit 달성 교원 창업기업의 증가 등)
- 교원 창업을 진행하기 전 학교에 창업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함

## ✔ 창업승인 절차

- 학내 교원의 창업을 제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고자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업지원위원회 최종 승인 후 창업 가능
- 창업지원위원회 전 사전검토를 위한 창업심의위원회가 진행되며 창업지원단, 산학협력단, 서울대기술지주회사와 신청 교원 간 컨설팅을 진행
- 기술성, 타당성, 사업성 및 성장성, 기타사항(사업계획서 작성 및 창업심의과정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창업승인 여부를 판단
- 창업지원위원회는 1월, 7월을 제외하고 매월 진행되며 창업신청 후 창업지원위원회 최종 심의까지 약 2개월 소요

## ✔ 창업지원위원회

- 교원 창업 승인 및 대학의 창업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창업지원위원회를 운영
- 창업지원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 내부, 외부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

## ✔ 창업 지원 현황

- 창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창업지원단’이 행정기구(대학본부조직)으로 있으며, 창업보육센터(6개) 등 다양한 학내 창업지원 유관기관이 함께 운영되고 있음
- 교원 창업 가이드북을 통해 창업 준비단계, 창업 신청단계, 창업 기업 설립단계에 따른 절차와 지원내용을 안내하고자 함

02

# 교원 창업 절차



■ 학내 절차  
■ 학외 절차



# 03

## 교원 창업 시 유의사항



### [1] 사전 검토

#### 사전 검토 안내 부서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창업지원단(02-880-8985)
-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관련 사항: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실 지식재산관리부 (02-880-7890)
- 기술지주회사 지원 관련 사항: 기술지주회사(02-880-2027)

#### 형식적 요건

- ◆ **신청 요건**
  - 전임교원 및 기금교원
  - 부교수 이상 또는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 3년 미만 조교수 중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타 기관 사외이사 등 겸직 여부(2개 기업까지 겸직 가능, 지분 참여인 경우는 해당 없음)
- ◆ **대학과 이해상충 여부**
  - 창업기업 내 학생 참여, 학내 연구 장비 및 공간 등의 활용, 직무발명 신고 및 기술이전 등 대학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없는 경우

####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 ◆ **지식재산권 활용 여부**
  - 창업 기업 활용 기술 목록 및 직무발명 등록 여부
  - 지식재산권 및 관련 연구과제 현황
  - 지식재산권 활용 범위
- ◆ **기술이전 범위**
  - 기술이전 계약 체결 여부 및 필요성 안내
  - 기술계약 체결 시 기술범위 및 기술료 등 사전 협의

#### 기술지주회사 지원

- ◆ **사업성 검토를 통한 자회사 참여 및 투자 여부 사전 검토**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참여 의사 확인
- ◆ **기술지주회사 투자 참여 여부 검토 및 지원프로그램 안내**
  - 기술지주회사 투자 가능 여부
  - 기타 기술지주회사 지원 프로그램 안내

## [2] 요건 및 신청서 제출

### 창업 신청 요건 및 신청서 제출

- 목적: 창업 신청 요건 및 창업기업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
- 안내부서: 창업지원단(02-880-8985)

#### • 창업 신청 유형

- 창업자가 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원(대표이사, 등기된 사내이사 등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를 포함)에 취임하는 경우
- 창업자 또는 창업자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특별관계인)\*\*가 누구 명의로 하든지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지분)을 합하여 창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특별관계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총장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경우\*\*\*

- \* 명칭이나 직함 불문하고 창업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이사, 상근감사(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사원, 지배인 등
-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혈족·인척 및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 창업기업 대표자 임면 또는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이상 선임, 주요 경영사항이나 업무집행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

#### • 제출서류

1. 창업 승인 신청 공문(공문에 창업 신청 유형 반드시 기재)
2. 공문 첨부 서류(원본 창업지원단(32-1동 2층)에 제출)
  - 1) 창업 승인 신청서(창업 사업계획서 포함)
  - 2) 확약서
  - ※ 창업 신청 '유형 나'(창업기업의 주식 2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만 [별표 2] 확약서 제출, 그외 [별표 1] 확약서 제출
  - ※ 본교 교원 2인 이상이 공동창업하여 위 창업 신청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원 모두 창업 승인 신청 서류 제출 필요
    - (예시) A, B, C, D 교원이 '가'회사를 창업하여 A 교원은 창업기업의 대표이사, B 교원은 창업기업의 임원, C 교원은 창업기업의 주식 20% 이상 소유하는 경우, D 교원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 A~D 교원 모두 창업 승인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각 창업교원이 주식 5%에 대한 연대 출연

### • 창업 승인 요건

- 부교수 이상이거나 본교에 3년 이상 근속한 교원
- 3년 미만 근속 교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① 기술의 특성상 창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②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 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창업 승인 신청서 제출 방법

- 창업승인신청서(별도 양식)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창업지원단으로 **공문 신청**
- 창업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후 창업지원위원회 상정 여부 안내
- 창업지원위원회 참석하여 **사업 계획 발표**(발표 및 질의응답 10분 내외 진행, 발표자료 작성 후 위원회 전까지 담당자 메일 송부)
- **승인 결과 통보**(위원회 후 1주일 이내)

#### ※ 유의사항

- ① 창업승인신청 공문에 창업 신청 유형(창업기업 대표 등 임원 취임, 창업기업 주식 20% 이상 소유, 지배적 영향력 행사) 기재
- ② 신청 요건 중 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원에 취임하는 경우만 발표대상이며 지분 보유 및 지배적 영향력 행사만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심의 진행
- ③ 본교 교원 2인 이상 공동창업의 경우 해당 교원 모두 창업 승인 요청

## [3] 주식출연

### 주식출연 및 출연방법

- 목적: 창업교원에 출연 받은 주식을 통해 학내 창업 지원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안내부서: 창업지원단(02-880-8985), SNU벤처스(02-880-2027)

#### • 주식출연 절차

- 창업승인신청 시 주식출연에 관한 **확약서(별도 양식) 제출**
- 창업 승인을 받은 교원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기업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5의 주식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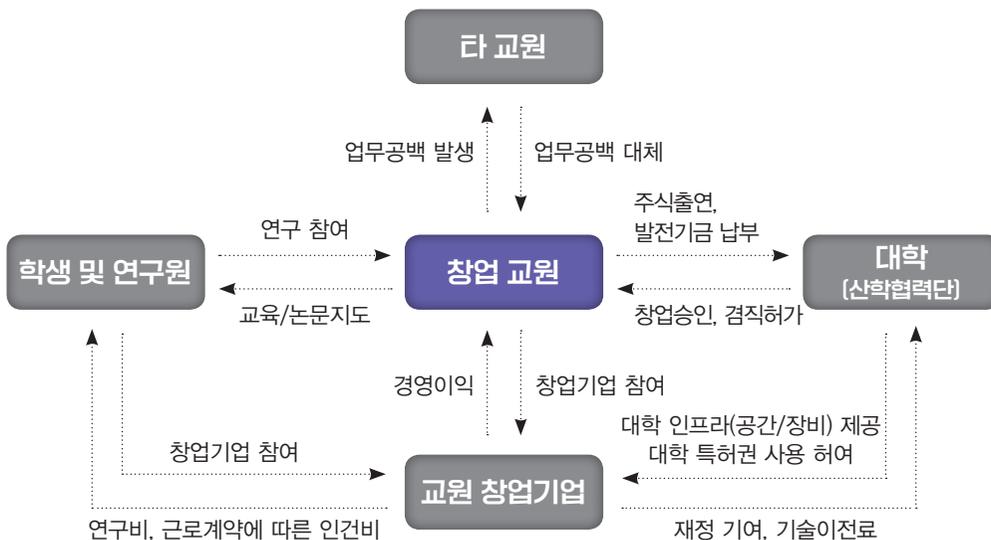
#### • 주식출연 시 유의사항

- 교원 창업기업의 **자본금 1억원 한도로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5의 주식 출연**
- SNU벤처스 혹은 수증자(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선택해 출연
- 겸직에 의해 **발전기금 금액 출연 시 주식 출연한 해당연도 1회 공제**
- 2인이상의 교원의 **공동창업인** 경우 연대 의무 가능

## [4] 이해상충 문제 확인

### 교원 창업 관계자들간의 관계

- 창업 교원과 학생 및 연구원, 대학, 창업기업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여 대학의 기술사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학생 및 연구원, 대학 내 공간·기자재 등 인프라 활용 등에 있어 학내 가이드 준수 필요



## ✓ 학생·연구원의 창업기업 참여

-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창업 기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창업 기업 업무 수행에 따른 정당한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지급·4대보험 가입 필요**
- 서울대학교와 전속 근로계약을 체결한 **총장 발령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겸직 금지**되므로 창업기업 참여 불가
- 학내외 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원**의 경우 **창업기업 참여 형태에 따라 학생인건비계상률을 계산**해야하므로 연구비 발주기관 등에 사전 확인이 필요

### 〈가능 사례〉

- 총장 발령 연구원이 아닌 소속기관장 자체발령 연구원인 경우 기관장과 연구책임자 사전 동의가 필요
- 총장 발령 연구원 중 **직원연구원(외부 겸직 가능)**

### 〈금지 사례〉

- 창업기업의 사업아이템과 연구 내용이 유사하거나 논문지도를 이유로 학생의 요청 없이 창업기업 연구업무에 참여시키고 이에 대한 급여 미지급
- 창업기업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등의 고용 절차를 누락한 경우

## ✓ 교내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용

- 학교 소유 연구장비를 창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비를 **공동활용 연구장비로 등록하여 사용료 납부**
  - ※ 근거: 「서울대학교 연구장비 공동 활용 관리 규정」 및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
- **장비 등록·사용 절차 및 사용료 산정 기준은 관리기관이 따로 정함**



## ✓ 학내 공간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 창업 기업이 학내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소속 대학(원), 연구시설에 **법인재산 임대신청서 제출 및 승인 필요**

## ✔ 창업 교원의 복무

- 학생의 교육·지도, 학문연구 등 교원의 임무 외에 창업기업의 임원으로 복무 시 학교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겸직 가능 기업 수 및 가능 시간 준수
  - 1인당 2개 회사 이내, 모든 대외활동 시간이 총 근무시간의 1/5 이하(주당 8시간 이내) 가능
- ‘창업 승인 절차’와 ‘겸직 승인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로 창업 승인을 받은 교원은 반드시 겸직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사외이사 및 감사 겸직 시 겸직기간 및 겸직 종료 후 2년 이내에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용역 수탁 금지
-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은 그 해에 겸직이력이 있는 모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적 지원의 총액의 일정부분을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하고(원천징수 영수증 세전 금액 2천만원 초과 금액의 15%), 이를 이듬해 1월 보고

## ✔ 경업금지에 관한 사항 유의

- 경업금지란, 기존 회사의 기술 또는 영업에 필수적인 비밀을 알고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동종 업종으로 창업을 금지하게 하는 사항으로 영업비밀 누설, 기술 유출 등의 사유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민간 연구과제, 민간기업 겸직 이후 창업 시 경업에 대한 이슈가 없는지를 검토하여 창업을 진행해야 함

## [5] 창업 기업 변경, 폐업, 창업 승인의 취소

### ✓ 창업 기업의 변경 신고 및 보고

- 창업 기업에 대한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총장에 신고해야 함
- 신고 사항: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승인 받은 신청서 상의 주요 사업 내용 변경, 법인 전환, 사업자등록증 상 변경 등
- 신고방법: 창업지원단으로 변경사항 기재하여 제출(사업자등록증 첨부)

### ✓ 창업기업의 폐업

- 창업기업의 폐업 시 폐업신고 사실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여 창업지원단으로 통보
-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폐업에 의한 중도사임을 교무과로 통보

### ✓ 창업 승인의 취소

- 근거: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창업승인의 취소)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창업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 창업자가 본교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 본교의 창업 지원 사항을 악용하는 경우
- 창업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창업활동이 직무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사회적, 윤리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창업승인이 취소된 경우 창업 사유의 휴직 또는 겸직 승인 취소

Part 2

# 창업 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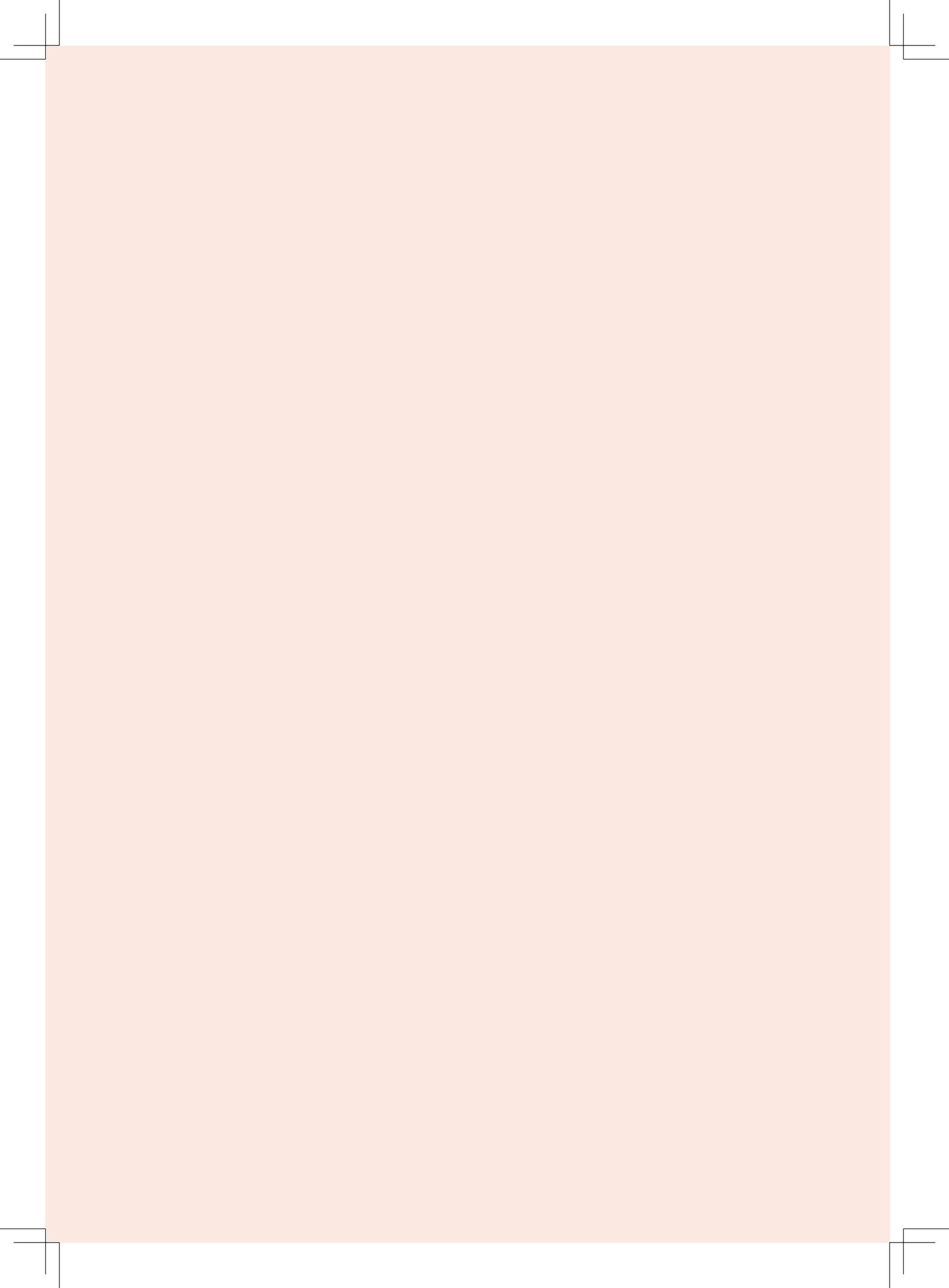
04 창업승인신청서 작성

05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06 서울대기술지주회사 안내



교원 창업 승인 신청 절차와  
창업 시 활용할 지식재산권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과  
특허 부정적 사용 사례를 안내합니다.  
또한 서울대기술지주회사의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 04

## 창업승인신청서 작성



###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매달 학과(부)에 창업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창업승인신청서: <http://rule.snu.ac.kr> →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별표

[별지서식] [개정 2017.10.13.]

#### 창업 승인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임용일자	
창업(예정) 회사	기업제형	대표자		
	소재지			
	설립(예정)일자	자본금	천원	
	창업분야	업종/업태	고용인력	명
	창업신청 사유			
창업기간 추진계획	(강의 및 학생지도, 연구계획 등)			
추천사유	(기관장 추천)			

위와 같이 창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자: \_\_\_\_\_ (서명 또는 인)  
소속 대학(원)장: \_\_\_\_\_ (인)

붙임서류: 창업 사업계획서 1부.  
\* 창업에 따른 휴직 또는 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을 따름  
**서울대학교 총장** 귀하

#### 창업계획 요지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창업분야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인터넷 □화학/생유 □의료/의약용 □생명/식품 □환경/에너지 □공예/디자인 □기타 ( )		
보유현황	자본금(천원)	인력(경영, 기술진)	활용기술간수
			장비수
목적 및 개요			
창업추진 배경			
창업 기술 내용 및 운영방안			
시장현황 및 관여전략			
합류 추진일정 및 학교 기여 계획			

\* 내용은 개요적으로 작성

- 신청자 직급 및 임용일자 반드시 기재, 그 외 창업(예정)회사 관련 내용 중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미정'으로 기재
- (창업기간 추진계획) 1) 직무발명 신고, 기술이전 계획 등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2) 연구실과 창업기업과의 분리 방안, 3) 교육 및 연구의 누수 방지 방안, 학생·연구원의 창업기업 참여 시 관리 방안 4) 창업기업으로서의 학교 자산 장비 사용 시 장비소관 기관(부서)로의 사용료 납부 및 관리 방안 반드시 작성
- 소속 대학(원)장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공문발송(원본은 창업지원단으로 송부)

## 1. 창업자 인적사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연락처			
최종학력	졸업년도	학 교 명	전 공	수학상태 (졸업, 수료, 중퇴)	비 고 (취득학위 등)
경 력	근무기간	근 무 처		담당업무 (최종직위)	
		근무처명	업종		
	~				
	~				
기타특기사항	(자격증, 상벌, 연수, 대외활동사항)				
연구개발 및 사업화실적	개발과제명 및 내용	근무처	개발기간	사업규모 (소요자금)	비고 (사업화현황 등)
경영철학 및 경영목표	(창업동기, 향후 회사발전계획, 인사/조직관리 및 거래처 선정중시 사항 등)				

1. 창업자 인적사항 창업기업의 대표자 인적사항 작성: 창업 신청 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신청 교원의 인적사항도 추가로 작성

※ 대표자 2인 이상의 공동창업 건은 공동 대표자의 인적사항 모두 작성

- (연구개발 및 사업화실적) 창업 대표자와 관련 있는 대표 연구과제를 적고 창업기업과 연관될 경우 비교란에 '창업 기술 관련 연구' 기재

## 2.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현황

인력 현황 (경영진)	직위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전공)	주요경력(동업종)
인력 현황 (기술진)	직위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전공)	주요경력(동업종)
사업장규모	사무실 소재지			면적	(m <sup>2</sup> )
	연구소 소재지			면적	(m <sup>2</sup> )
설비현황	연구장비	장비명	수량	가격	용도
	기타장비				

2.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현황-인력 현황: 신청자를 포함한 창업 기업의 경영진 및 기술진 작성

(설비현황) 학교 기자재 활용 시 장비명 뒤에 '학교 자산' 추가 기재

※ 학교 연구 장비를 창업기업에 활용할 경우 장비 사용에 대한 비용 납부 필요

### 3. 기술개발 사업계획

기술사업개요	기술(사업)명		개발방법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공동	
	개발(예정)기간		개발비용		제품화여부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권리구분	<input type="checkbox"/> 특허권 <input type="checkbox"/> 실용신안권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저작권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업화 단계	<input type="checkbox"/>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input type="checkbox"/>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input type="checkbox"/>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input type="checkbox"/>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	
		등록(출원)번호				
	권리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관계	
	발명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관계	
(제품의 특성 및 핵심기술, 기술개발내용 및 과정 등)						
(국내 경쟁사 제품 및 국외 경쟁사 제품과의 품질, 기술, 가격 비교 등)						
(개발완료 및 제품화시기, 설비도입, 양산착수, 판매 등의 계획)						
(매출증대, 고용창출, 경영개선 효과 등)						
투자유치 계획						

3. 기술개발 사업계획: 창업 관련 특허 내용 상세 기재(출원일자, 대표발명자, 기술이전 이력 등), 기술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특허명 및 기술이전 계획 상세 기재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올바른 직무발명 신고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부적정 귀속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출원(예정)·등록 특허 활용 전 예비 출원 절차에 대한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실과 사전 협의 필요(창업 심의 시 '창업기술의 적격성'을 검토함에 따라 발명(예정) 기술을 대학에 특허·노하우 형태로 출원·등록 필요)

- (투자유치계획)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참여 계획, TIPS 투자 유치 관련 사항, 외부투자자 참여 여부, 지분 관계 등 작성

## 4. 시장 현황

시장현황 및 특성 (단위 : 백만원)	-시장규모				
	구 분	직전년도	당해년도	차기년도	차차기년도
	세계시장				
	국내시장				
	※ 작성근거(반드시 기재)				
	구 분	국 내	국 외		
	시장상태(독점/경쟁)				
안전성(유/무, 고/저)					
지속성(유/무, 고/저)					
성장성(유/무, 고/저)					
주요 수요처 (    년)	수요처명	수요처의 총수요규모	당사 수주(납품) 예상 규모		
경쟁업체 현황	국내시장	(업체명, 기술개발계획, 양산/증산계획 등)			
	국외시장	(업체명, 기술개발계획, 양산/증산계획 등)			
판매전략	(경쟁제품과의 비교등을 통한 신청기술(제품)의 판매전략 위주로 기술)				
판매계획 (단위 : 백만원)	제 품 명	직전년도	당해년도	차기년도	차차기년도

4. 시장 현황: 국내 및 세계 시장 현황 규모 대략적으로 파악 가능하도록 기재,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판매전략, 판매계획 작성

## 5. 향후 추진계획[상세기술 요망]

향후 추진일정 계획	
인력수급 계획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설비투자계획	(추가 설비명, 구입처, 규격, 금액 등을 명시)
학교기여계획	

5. 향후 추진계획: 대학 기어 계획 및 인력, 소요자금, 설비투자 등을 기재

- (향후 추진일정 계획)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참여 계획, 기술이전 계획, 학교 재정기여 계획 등
-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창업기업의 참여 인력 간 자본금 출자구조 및 지분구조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별표 1] 확약서(제4조 관련): 규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확약서**

본인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귀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이 확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확약서에서 특별히 정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및 「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에서 정의된 내용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1. 본인은 규정 제9조에 따라 20\_\_ . \_\_ . \_\_. 자로 [창업예정회사명]에 관한 창업 승인을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규정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기업의 자본금 1억원을 한도로 창업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을 귀 법인 또는 귀 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출연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본인이 보유하는 창업기업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시행세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의 매도통지의무, 동반매도권자의 동반매도권의 내용, 동반매도권자의 동반매도권 행사 시 본인의 처분의무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시행세칙 제6조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본인은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이사회 안건을 수증자에 서면으로 사전 통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5. 본인은 본인이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 본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인에 대한 창업지원이 중단되거나 창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6. 위 사항 이외에도 본인은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 본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에 따른 의무사항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_\_ . \_\_ . \_\_.

서울대학교          대학          학과(부)  
(인)

[별표 2] 확약서(제4조 관련): 규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확약서**

본인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귀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이 확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확약서에서 특별히 정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및 「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에서 정의된 내용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1. 본인은 규정 제9조에 따라 20\_\_ . \_\_ . \_\_. 자로 [창업예정회사명]에 관한 창업 승인을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규정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기업의 자본금 1억원을 한도로 창업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을 귀 법인 또는 귀 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출연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본인이 보유하는 창업기업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시행세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의 매도통지의무, 동반매도권자의 동반매도권의 내용, 동반매도권자의 동반매도권 행사 시 본인의 처분의무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시행세칙 제6조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본인은 본인이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 본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인에 대한 창업지원이 중단되거나 창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5. 위 사항 이외에도 본인은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 본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에 따른 의무사항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_\_ . \_\_ . \_\_.

서울대학교          대학          학과(부)  
(인)

창업유형에 맞는 확약서를  
선택하여 작성 후  
창업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

※ 제출한 창업승인신청서를 바탕으로 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 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예정

## [2] 교원 창업 심의 기준

- 교원 창업 심의 시 평가기준을 승인 / 조건부 승인 / 불승인으로 나누어 운영 중이며 창업 승인신청서 작성 시 검토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평가기준	검토항목
승인	<p>(기술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 개업<sup>1)</sup>이 아닌 연구개발성과물을 활용한 창업(Venture, Startup)</li> <li>- 창업 기술이 특허나 노하우로 확보할 수 있는(또는 완료된) 연구결과물로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음</li> </ul> <p>(타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에 대한 목표와 의지가 뚜렷하고, 창업자의 연구 경력 등이 창업 업종과 부합함</li> <li>- 창업자가 대학이 보유한 인력 및 인프라 활용에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없음</li> <li>- 본교에 대한 기여 방안이 구체적임</li> </ul> <p>(사업성 및 성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자가 사업계획, 인력수급 계획,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설비투자 계획,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판매전략, 법적문제 등의 분석을 통해 사업성, 성장성이 있음</li> <li>-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높고 향후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li> </ul> <p>(기타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의 작성, 발표, 질의응답의 충실성</li> <li>- 타당성, 기술성, 사업성, 성장성 이외에 심의 시 고려할 항목</li> </ul> <p>※ 1) 단순 개업: ① 교원의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창업 ② 교원의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관련 있으나 교원 본연의 업무인 교육·연구와 유사한 형태의 창업*, 기술실용화(산업화)로 보기 어려운 창업, 시장에 일반화 되어 있는 사업 또는 시장 차별화가 낮은 창업</p> <p>* 교육, 컨설팅, 자문업, 전문자격을 활용한 창업, 용역사업 수행이 주가 되는 창업 등</p>
조건부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성 및 사업성, 시장성, 기타 창업지원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li> </ul> <p>※ 심의 결과에 따른 요건 충족 시 창업지원위원회 재심의 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창업을 진행할 수 있음</p>
불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기반 창업이 아니거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활용하지 않는 창업</li> <li>-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성 및 사업성, 시장성 등에 있어 전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 사업계획이 대학의 연구개발과제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ul>

# 05

##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 [1] 직무발명

####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사전 검토: 직무발명

- 목적: 본교 직무와 관련된 발명은 산학협력단에 직무발명 신고 의무
- 안내부서: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실 지식재산관리부 (02-880-7890)

#### • 직무발명 신고 유의사항

- 창업 및 겸직 승인 이후라 하더라도 본교 교직원 등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 창출 시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승계함

※ 본교 교직원 등(교원, 조교, 직원, 연구원,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학생, 수료생 포함)의 발명에 대한 신고누락 또는 사후 신고 되지 않도록 유의

#### • 직무발명 신고 절차

- 연구행정정보시스템(SRnD)을 통하여 Online으로 발명신고 제출 및 권리승계 (발명자 전원 동의)까지 완료

####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6조(지식재산의 귀속) ① 본교의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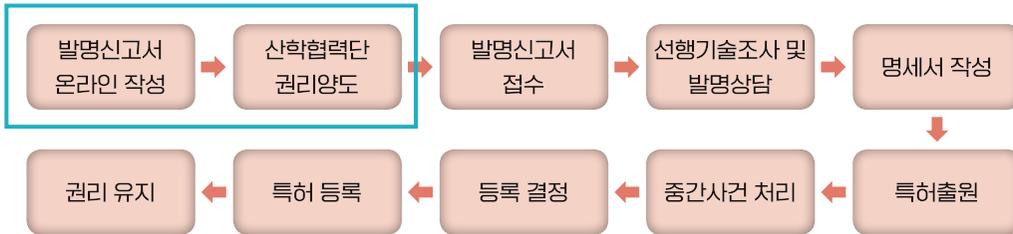
제7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발명신고**

· 직무발명

- 본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 관련 창출한 지식재산
- 본교(산하 법인) 또는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창출한 지식재산
- 법률이나 제 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된 지식재산 등
- 지식재산권 귀속: 본교의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귀속되며 발명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

**발명자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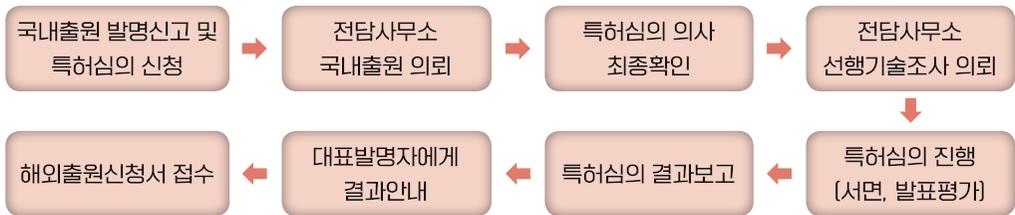
- 발명신고서 작성 및 권리 승계: 연구행정 통합관리 시스템(SRnD)에서 발명신고 후 본교 소속 발명자 전원 산학협력단으로 권리 양도 절차 진행
- 발명신고서 접수: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발명신고서 검토 및 접수 후 특허 대리인 사무소에 출원 업무 의뢰
- 선행기술조사 및 발명상담, 명세서 작성: 산학협력단 및 대리인 사무소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발명자와 발명 상담 후 특허명세서 및 필요서류 준비
- 특허 출원: 명세서 및 서지사항 최종 확인 후 대리인 사무소에서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 후 출원번호통지서를 받음
- 중간사건 처리: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가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의견서 및 보정서 등 제출
- 특허 등록 및 권리 유지: 특허 등록결정 후 산학협력단에서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 설정 등록하며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 권리 유지함
- ※ 정규출원 비용: 대표발명자의 특허지원 간접비, 연구자 마일리지, 연구과제 직접비, 발명자 자체 부담 등
- ※ 예비출원 비용: 발명의 내용 공개가 임박한 경우(논문 출판, 학회 발표 등) 또는 대표 발명자의 특허지원 간접비가 부족한 경우에 예비출원(청구범위유예제출/임시명세서 제출)으로 신속하게 출원 진행 가능하며 이후 정규출원은 우선권주장출원으로 진행

• 특허심의

• (특허심의대상) 본교가 기술사업화 주도 가능한 직무발명 및 발명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

- 심의제외 사항
  - (출원형태) 예비출원(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들어갔다면 아직 완성되지 않더라도 출원일이 부여된 건), 긴급출원(1개월 이내 출원해야 하는 건)
  - (영리기관 또는 창업기업 공동소유) 영리기관과 공동 건으로 기업체가 특허 비용 전액 부담하며, 기업체 결정에 따라 후속 특허출원 진행
  - (비영리기관 공동소유) 비영리기관과 공동 건으로 타 기관이 최대지분권자인 경우, 해외출원 진행 시 특허심의 절차에서 제외하고 후속 특허출원 진행

• (특허심의위원회) 우수특허 발굴, 기술사업화 효율화 등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심의 결과에 따라 해외출원 등을 지원



• (전담특허사무소 출원) 해당 분야 전담사무소에 출원 의뢰 및 출원 완료

※ 전담 특허사무소는 공개입찰을 통해 복수 선정하며 선정 분야는 다음과 같음

NO.	선정 분야		선정 기관 수	
1	전자소자	소자 구조/반도체/디스플레이/광학	1기관	총 9기관
2	통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영상처리/신호/전파	2기관	
3	바이오	진단/의약/식품/화장품/의료데이터/의료용품	2기관	
4	화학, 재료	화학/소재/공정	2기관	
5	기계, 환경, 건설	기계(장치, 설비)/에너지/환경/건설/기타	2기관	

※ 발명자 특허심의 미신청 건은 기존방식으로 진행함

• (심의 등급별 출원 지원 사항) 해당 분야 전담사무소에 출원 의뢰 및 출원 완료

등급	진행 내용 (재원)	등급 설명
S	국내, PCT, 해외 2개국 진행(산학협력단 예산)	원천성이 우수하고, 미래 기술 분야를 혁신·주도 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
A	국내, PCT, 해외 1개국 진행(산학협력단 예산)	특허성이 우수하고, 기존 기술 대비 높은 차별성을 나타내는 기술 또는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B	별도지원 없음	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이 높지 않으며, 근시일 내 기술 사업화 가능 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추가 예산 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술

※ B등급으로 결정된 기술에 대해 발명자가 해외출원을 희망할 경우 대표발명자별 특허지원간접비 계정  
에서 차감

• (전략특허)

- 정의: 특허성, 원천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이 매우 우수한 출원 또는 출원 예정인 기술  
로써 산학협력단이 주도하고 전체 또는 요소 기술에 대하여 특허 분석, 포트폴리오를  
설계 및 구축을 통해 기술사업화 가능성을 최대화하여 전략적으로 확보한 특허
- 심의 대상: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실무위원회 발굴 기술
- 심의 방식: 특허심의위원회에서 발표평가 방식으로 진행
- 지원 사항:

유형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등급 설명
A형	심의결과 A형 선정	국내외 출원 지원	원천성, 기술성, 사업성이 매우 우수하여 기술사업화 가 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외출원이 필요한 기술
B형	심의결과 B형 선정	국내, PCT, 미국	미래유망기술 기술군에 포함되는 우수기술로 중장기적 으로 기술사업화, 산학협력 및 창업 가능성이 있는 기술

※ 미래유망 기술군: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BT-IT 융합, 인공지능·데이터, 플랫폼 바이오,  
레드 바이오, 그린·화이트 바이오, 개량 및 혁신신약, 차세대 이차전지, 우주산업 관련 기술(기술트렌  
드 및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미래유망기술 기술군 추가 가능)

**산학협력단 안내부서 연락처(대표 발명자 교수 소속 기준)**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 공과대학(전기정보/컴퓨터공학): 02-880-7890
  - 공과대학(전기정보/컴퓨터공학 외): 02-880-7891
  - 의대/치대/간호대: 02-880-2263
  - 그 외 대학: 02-880-2263
- 기타 지식재산권
  - 저작권(프로그램/일반), 노하우: 02-880-7890
  - 품종보호, 균주/미생물기탁: 02-880-2263
- 기술이전: 02-880-2038, 2026

**[2] 기술이전****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사전 검토: 기술이전**

- 목적: 창업자가 직무발명으로 본교에 귀속된 기술 또는 이외의 본교 보유기술을 이 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계약 체결 필요
- 안내부서: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실 전략사업부 (02-880-2038, 2026)

**● 기술이전 대상**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노하우(물집합성공정, 측정방법 등)
- 기타(유전자 정보, 균주, 실험실에서 합성한 특수화학물질 등을 물질이전계약을 통해 이전)

**● 기술이전 유의사항**

- 본교 소유 기술을 이용한 창업의 경우,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산학 협력단과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 필수적임

● 기술이전 방식

- 기술(또는 특허)양도: 기업에게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후속연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실시
- 전용실시권(또는 독점실시권): 특정기업에게만 기술(또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으로 절반이상의 기술이전계약이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통상실시권: 여러기업에게 기술(또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으로 제약 분야 등 다수의 수요기업이 있는 기술을 라이선스할 경우에 사용하고 있음

● 기술이전 절차

기술이전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해각서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이전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li> <li>- 대학(또는 연구자)이 수요기업을 처음으로 만날 경우 주로 체결(특히 외국기업과의 기술이전 체결)하며 국내기업과는 주로 다음단계인 비밀유지계약부터 체결함</li> <li>- 법적 구속력은 거의 없으며 대상기술에 대한 정의, 기술실사의 방법, 대략적인 기술이전 조건, 기술실사 후 기술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보상방법, 비밀유지 등에 대한 내용 명시</li> </ul> </li> <li>□ 비밀유지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의 경우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건과는 달리 한번 내용을 보여주면 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음</li> <li>- 논문, 특허 등을 통해 이미 공개가 된 내용이 아닌 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실험자료 등을 기업에게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체결해야 함</li> </ul> </li> <li>□ 기술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관계자가 대학의 보유 기술에 대해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기술의 유효성 등을 검증하는 단계</li> </ul> </li> <li>□ 조건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권의 종류(양도, 전용, 통상), 계약기간 및 기술료를 협상</li> <li>- 연구자는 투입된 연구비, 기술개발을 난이도, 원하는 기술료 규모 등을 지식재산관리실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실제 협상은 기업과 지식재산관리실 간 이루어짐</li> <li>- 이전대상 기술이 정부과제 결과물인 경우 과제규정에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li> <li>- 기업의 경우 연구자와의 직접 협상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연구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기술에 대한 설명만을 기업 측에 하고 기술이전에 대한 협상은 대학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li> <li>□ 계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학교는 표준 기술이전계약서를 준비하여 사용하고 있음</li> <li>- 기술이전은 기업에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침해보증 사업성 보장 등 학술연구결과로는 보장할 수 없는 내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표준 기술이전 계약서에 이에 대학의 요구사항을 명시함</li> </ul> </li> </ul>
---------	--

기술료 징수 및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료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액기술료: 기술료를 일정 금액으로 산정하여 징수(주로 정부과제 결과물)</li> <li>- 선급+경상기술료: 연구비 규모를 기준으로 선급기술료를 계약 체결 시 징수하고 향후 기업이 사업화에 성공하면 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청구</li> </ul> </li> <li>□ 기술료 배분: 기술이전계약을 통해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면 정부과제 규정 및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의 상당부분을 발명자에게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과제 결과물인 경우: 각 해당 정부부처의 관리규정에 맞게 배분. 관리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아래와 같이 배분 금액 결정</li> <li>- 선공제: 실시료의 50% 발명자 보상금, 지식재산관리화비용(실시료의 5%), 기술이전 관리비용</li> <li>- 후배분: 선공제 후 남은 실시료의 3/5 기관경비, 기관경비 공제 후 남은 경비는 추가 발명자 보상금</li> <li>- 정부과제 결과물이 아닌 경우: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지침 참고</li> <li>- 선공제: 지식재산관리화비용(산학협력단에서 집행된 금액), 기술이전자 기여금(4~8%) 선공제 후 남은 실시료 수익금액은 아래와 같이 Scale Sliding 방식으로 배분 2,000만원 이하: 100:0 / 2,000만원~1억원: 80:20 / 1억원 ~ 5억원: 70:30 / 5억원 초과: 50:50</li> </ul> </li> </ul>
↓	
발명자 보상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규정」에 따라 발명자 보상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이행사항 준수 여부 점검</li> <li>- 경상기술료 징수를 위한 매출액 확인</li> <li>- 해당 정부 부처에 기술이전 실적 보고</li> </ul>



### [3] 부정적 활용 사례

#### ✔ 직무발명 부정적 특허출원 주요 사례

1. 연구과제 성과물을 교원 관련 회사 명의로 특허 출원
  - 서울대학교 수행 연구과제 성과물 특허 또는 과제 참여 교원이 발명자로 참여한 특허를 교원이 대표이거나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관계에 있는 회사 단독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 ☞ 연구과제 성과물의 특허는 관련 법령 및 연구계약서에 의해 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하여야 함
    - ※ (정부)과제 성과물 특허를 대상으로 소관 정부부처 또는 자체감사, 외부감사(감사원 등)에서 정기적으로 추적
2. 교원 발명 특허를 대학과 회사 명의로 공동 출원
  - 서울대학교 수행 연구과제 성과물 특허 또는 교원의 연구개발 범위에 해당하는 특허를 대학과 교원 관련 회사 명의로 공동 출원하는 경우
  - ☞ 연구계약서에 의해 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유로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 규정」에 따라 발명 즉시 산학협력단에 직무발명 사실을 신고해야 함
3. 연구과제 성과물을 교원 미참여 발명 특허로 회사 단독 명의 출원
  - 서울대학교 수행 연구과제 성과물 특허의 발명자에서, 연구참여 교원을 누락하고 회사 명의로 단독 출원하는 경우
  - ☞ 연구계약서에 의해 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유로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 규정」에 따라 발명 즉시 산학협력단에 직무발명 사실을 신고해야 함
4. 대학 연구실 성과를 교원 관련 회사에서 무단 사용
  - 대학 연구실에서 직무발명으로 개발된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 하지 않고, 노하우 상태로 별도의 기술이전 계약 없이 회사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노하우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하여야 하며, 이를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직무발명 신고 후,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 계약을 해야 함

5. 정부지원과제 성과물을 교원 관련 회사 민간과제 성과물로 변경 출원

- **정부지원과제 성과물 특허를 교원 관련 회사로부터 수주하고 해당 정부지원과제와 연구 내용이 유사한 민간과제의 성과물 특허로 변경하여 출원하는 경우**

☞ 정부지원과제와 민간과제 성과물 특허는 서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출원하여야 함

6. 교원 관련 회사 소속 발명자 허위참여 공동 출원

- 교원이 발명한 특허의 발명자에 **교원 관련 회사 임직원을 허위로 포함시켜 대학과 교원 관련 회사 공동 명의로 출원한 경우**

☞ 해당 특허의 진정 발명자를 발명자로 등재하여야 함

※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최초의 권리는 발명자가 원시 취득하게 되며, 발명자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승계받은 출원인만이 특허를 적법하게 출원할 수 있음

※ 허위 발명자의 권리를 승계 받은 출원인은 정당 출원인에 해당하지 않아, 향후 특허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발명의 보상 단계에서 허위 발명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발명자의 보상금 감소로 인한 소송제기 가능성 있음

06

# 서울대기술지주회사 안내



## [1] 소개

- 서울대기술지주는 유망기술을 사업화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성장성 높은 기업설립, 발굴, 투자, 육성기관 엑셀러레이터 최다 벤처펀드 운용사 선정, 150여개사 투자, TIPS 우수 운영사 선정 등 최고의 엑셀러레이터로 도약 중에 있음



### 엑셀러레이터 선정

- 초기창업투자 및 전문보육 창업기획자 선정 (2018.2)
- 국내 약 400개 엑셀러레이터 중 최다 규모의 벤처펀드 운용 (20212(한국성장금융), 2021.5(한국모태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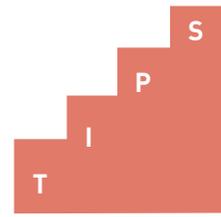
### 조합 결성 및 투자

- 모태펀드, 성장금융출자 펀드 운용 및 자회사 육성
- 10개 펀드 약 900억 원 규모
- 투자완료 펀드 우수 수익률 달성 중



### 투자 전문 구조 확립

- 투자 전문인력 충원 본격화
- 조직 전문성 강화 추진
- 규정 제/개정을 통한 내부관리 강화



### TIPS Top-tier 운영사

- 총 90여개 TIPS 운영사 중 최상위권 매칭률/추천권 확보
- 경기도형 팁스인 '경기도 WINGS' 1기 운영사 선정 및 최고 매칭 성공률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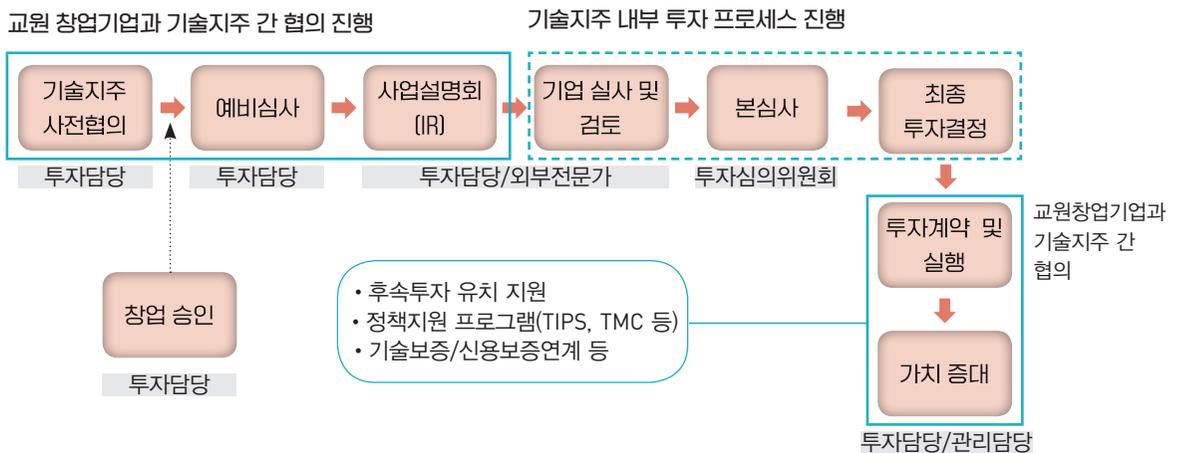
서울대 및 외부 우수 IP를 활용한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기술창업기업 투자 및 육성 5년내 투자 규모 1조원, 10년내 유니콘 기업 10개사 창출 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축으로 대학의 연구/교육 및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 TIPS: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기업 대상 연구개발비 지원 프로그램 (2년간 지분희석 없이 5~7억원 지원)

## [2] 투자/회수 프로세스

### ✓ 투자/회수 의사결정시스템

- 창업지원위원회 교원창업기업과 사전/사후 협의를 통해, 해당 창업기업의 사업성 및 투자 가치 제고 가능성을 높이고, 자체 지원 프로그램 적극 연계 등 밸류업 활동 적극 전개



#### • 창업지원위원회 사전/사후 사업성 검토 협의

- 사업성 검토: 높은 기술사업화 역량 내재화 기반의 사업성 협의
- 투자구조 검토: 사업구조 등 제반 사항 고려를 통한 자회사 편입/펀드투자 등 최적의 투자 방식 협의 및 제안

#### • 투자 집행을 위한 투자심사 프로세스 진행

- 투자심사 프로세스를 통한 기업의 재무/법률/운영/기술성 검토 진행
- 후속투자 유치가능성,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성 등 투자가치 제고 가능성 검증 및 확인

#### • 투자 집행후 연구개발비/사업화 자금 정책 지원 프로그램 적극 연계

- TIPS, TMC(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 등 연구개발비/사업화자금 지원 정책 프로그램 연계
- 창업보육센터 사무공간(S-Innovation Center) 연계
- 기술보증기금 유테크밸리, 신용보증기금 Campus Start-up 프로그램 등 보증기금 지원 연계

## ✔ 투자 및 회수 우수 사례

- 체계적인 독자적 투자/육성/회수 의사결정 프로세스 하에서 다수의 교원창업 기업 가치 성장을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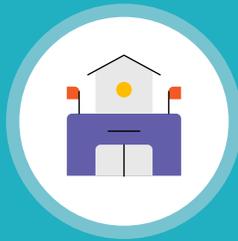


- 역량 있는 대학 기반 인프라 활용으로 스타트업 발굴 체계 구축
  - 스타트업 투자 벨트 조성 : 서울대 인프라 활용 발굴 체계
  - 관악S밸리, 시흥캠퍼스 등 협력 기반 기획창업 및 투자
- 외부 전문 투자사(VC)와의 공동 투자 & 후속 투자 집행
  - MOU 체결 30여개 투자기관(VC)과 공동 투자 집중
  - 후속 투자와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전문 투자사들과 성장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공동 투자 및 후속투자 집행
- 연구개발비/사업화 자금 정책 지원 프로그램 연계
  - TIPS, TMC, 경기 WINGS, 창업보육센터 운영
  - 기술보증기금 유테크밸리,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 지원
- 안내부서 연락처(서울대기술지주회사): 02-880-2039, invest@sth.ac.kr



Part 3

# 기업 설립 및 운영단계



07 법인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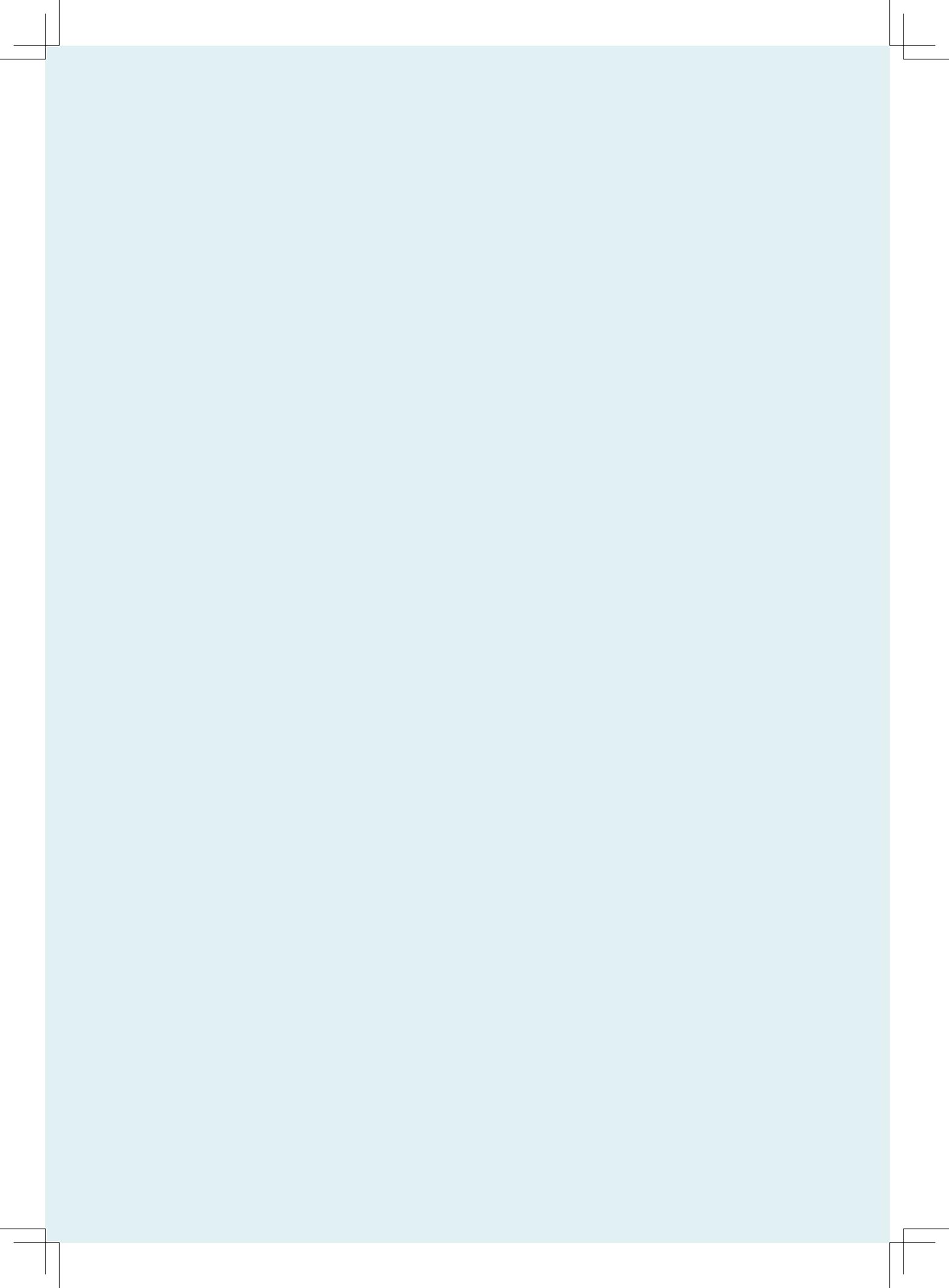
08 벤처기업 확인 신청

09 대학 창업공간 활용

10 대학 창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와  
벤처기업 확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또한 대학 창업공간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 합니다.



07

# 법인 설립



## [1] 법인 설립 절차

설립준비	사업계획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규모, 기업형태, 창업멤버와 조직구성, 자금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li> </ul>
	발기인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식회사 설립을 기획, 추진하는 주체모집</li> </ul>
법인설립	정관작성 및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관: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li> <li>정관인증취급 공증인(본점 소재 관할 검찰청)의 인증 정관 2부(발기인 전원 기명날인)</li> <li>각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대리인: 위임장 및 대리인 인감증명서)</li> </ul>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주식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기설립/모집설립 결정, 발행주식수, 발행가액 결정</li> <li>발기인의 주식 인수</li> </ul>
	주금납입 현물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식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정은행에 납입</li> <li>기술 및 특허의 현물출자(기술평가기관의 인증, 법원 검사인 조사)</li> </ul>
	이사·감사선임 및 창립총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주 1명 임원(이사) 1명 반드시 선임</li> <li>창립총회: 주식 인수인으로 구성, 대표이사 선임</li> </ul>
법인등록	법인설립 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기 절차 완료 후 2주 이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온라인(www.startbiz.go.kr)</li> <li>정관, 발기인총회 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원등기신청서, 잔고증명서, 임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li> </ul>
	사업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등록</li> <li>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 임대차계약서, 인허가 서류(필요시), 주주 출자자명세서 등</li> </ul>

## [2] 사업자 등록 및 기타절차

### ☑ 사업자 등록 방법 및 구비서류

등록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li> </ul>
미등록 시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가액의 합계액의 1% 가산세 부과</li> <li>• 매입세액 미공제</li> </ul>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li> <li>• 정관</li> <li>• 임대차계약서</li> <li>• 도면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건물 임대 시)</li> <li>•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li> <li>• 인허가 사업의 경우 허가등록신고필증, 현물출자 명세서, 자금출처명세서</li> <li>※ 업종, 설립형태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li> </ul>
발급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세무서</li> <li>•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교부</li> </ul>

### ☑ 기타 절차

부동산등기 (관할법원/등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등기원인 증빙서류</li> <li>•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li> <li>• 대리인 신청시 권한증빙서류</li> <li>•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부동산등기법 제40조)</li> </ul>
취업규칙신고 (노동부지방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서, 취업규칙, 의견서</li> <li>※ 근로자 10인 이상인 경우해당 (근로기준법 제96조)</li> </ul>
4대보험 성립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서(<a href="http://www.4insure.or.kr">http://www.4insure.or.kr</a>)</li> </ul>

# 08

## 벤처기업 확인 신청



### [1] 확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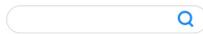
#### ✓ 벤처기업 확인 신청 방법

#####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
- ‘벤처기업’이란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

##### • 온라인 서비스 신청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
- 벤처기업 확인 제도 변경에 따라 신청시스템 간소화



로그인 회원가입

제도 안내

확인신청

벤처공시

벤처통계

기관소개

고객지원

###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를 통해 벤처다운 혁신기업을 선별합니다.

민간주도의 혁신 성장성을 갖춘 벤처생태계 조성



유형별 안내

확인절차

벤처유형 추천

확인신청

가이드북

## [2] 확인 요건

### ☑ 벤처기업 확인 요건

확인 유형	기준요건	전문평가기관	소요기간
벤처투자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li> <li>•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li> <li>•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li> </ul>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접수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연구개발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li> <li>•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li> <li>•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li> <li>•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li> </ul>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접수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
혁신성장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li> <li>•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li> </ul>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접수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예비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설립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인 자</li> <li>•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li> </ul>	기술보증기금	접수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

※ 출처: 벤처기업확인 요건 자료: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

### [3] 주요 혜택

#### ☑ 벤처기업 확인 시 혜택

분야	기준요건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li> <li>취득세 75% 감면</li> <li>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li> </ul>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벤처기업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 담보보증 70억원)</li> <li>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li> </ul>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득세·재산세 37.5% 경감</li> <li>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li> </ul>
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li> </ul>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수 2명 이상)</li> <li>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수 3명 이상)</li> <li>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li> <li>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벤처기업 50%)</li> </ul>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li> <li>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li> </ul>

## 09

# 대학 창업공간 활용



### [1] 학내 공간 활용 방법

#### 학내 공간 사용 허가

- 승인목적: 단과대학, 연구시설 등 학내 공간에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법인재산에 대한 허가가 필요
  - ※ 학내 공간 창업이 아닐 경우 본 절차는 불필요하며, 학외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자 등록
- 근거: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
- 구비서류: 임대신청서(서약서, 각서 포함), 창업승인공문, 임대 공간 평면도, 사업자 등록증(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예비)벤처 기업 확인서
- 처리부서: 단과대학, 연구시설 내 공간 담당 행정실
- 총괄부서: 재정전략실 자산운영과 (관악(02-880-2436), 비관악(02-880-5119))

#### • 임대 절차

- 임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대학(원)에 제출 → 임대 승인 통보
  - ※ 교원창업 및 창업보육센터 임대차계약은 해당기관장(단과대학장, 연구시설장 등) 승인
  - ※ 교원 창업 시 학내 공간 사용에 대해 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음
- 창업보육센터 입주의 경우 센터별 모집 공고 및 입주 심사하여 관리기관과 최종 임대차 계약 체결

#### • 임대료 기준

- 교원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인 경우,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인 경우: 기본임대료 대비 80% 감면 가능

## [2] 창업보육공간 현황

### 학내 공간 사용 허가

- 보육공간 별 입주 조건 및 입주 방법 등은 대표 연락처 통해 확인

구분	보육기관명 (관리기관명)	특화 유형	대표 연락처 및 홈페이지
관악캠퍼스	32-1동 창업지원 공간 (창업지원단)	예비, 초기창업기업	02-880-8985 <a href="https://startup.snu.ac.kr">https://startup.snu.ac.kr</a>
	신기술창업네트워크 (SNU공학컨설팅센터)	기술창업	02-880-7028 <a href="https://snuecc.snu.ac.kr">https://snuecc.snu.ac.kr</a>
	유전공학특화 창업보육센터 (유전공학연구소)	유전공학/생명과학	02-880-8290 <a href="https://imbgbi.snu.ac.kr">https://imbgbi.snu.ac.kr</a>
	S-Innovation 센터 (서울대기술지주회사)	종합형 (예비, 초기, 도약창업기업)	02-880-2027 <a href="https://snuholdings.com">https://snuholdings.com</a>
	81동 생명공학공동연구원 중앙공용실험실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바이오 융합	02-880-2843 <a href="https://bio-max.snu.ac.kr/">https://bio-max.snu.ac.kr/</a>
시흥캠퍼스	시흥캠퍼스 창업보육센터 (시흥캠퍼스본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031-5176-2235 <a href="https://siheungstartup.snu.ac.kr">https://siheungstartup.snu.ac.kr</a>
수원캠퍼스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농생명과학대학)	농생명/바이오	031-294-8526 <a href="https://agbio.snu.ac.kr">https://agbio.snu.ac.kr</a>
연건캠퍼스	덴탈메디케어 창업보육센터 (치의학대학원)	의학/치의학	02-740-8637 <a href="https://dentistry.snu.ac.kr">https://dentistry.snu.ac.kr</a>
학외 (대학동, 낙성대)	캠퍼스타운 창업 HERE-RO (캠퍼스타운사업단)	종합형 (예비, 초기, 도약창업기업)	070-7791-4632 <a href="https://campustown.snu.ac.kr">https://campustown.snu.ac.kr</a>

# 10

## 대학 창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1] 지원사업 현황



**연계사업**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      예비창업패키지사업      캠퍼스타운 사업  
(연간 10억원 내외, 과기부/교육부 지원)      (연간 20억원 내외, 중기부 지원)      (연간 20억원 내외, 서울시 지원)

**정부·지자체 창업 재정사업 수주**
- 관악S밸리 (서울시, 관악구, 민간 협력)      시흥캠퍼스 창업보육센터 (시흥시 협력)

**지역 협력 기반 창업 인프라 조성**
- 창업보육센터(6개), 기획창업 제도, 창업 행사 개최, 창업친화적 제도 등을 통한  
학내 혁신 창업 활성화 및 창업 문화 확산 유도

**대학 자체 자원 활용**

## [2] 학내 지원사업

### ☑ 창업 멘토링

- 대상: 예비창업자 및 업력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등(운영 기관에 따라 대상 확인)
- 창업일반, 사업계획서 검토, 법률, 회계(세무), 노무,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마케팅, 기타 멘토링 희망 분야
- 전문가-신청자 1:1 대면 및 비대면 상담 진행
- 대표 연락처: 02-880-8984(창업지원단)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 창업 멘토링

#mentoring #startup #consult

운영기간: 2023. 5. ~ 2024. 1.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업력 3년 이내(신생기업) 초기창업기업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신청 [startup.snu.ac.kr](http://startup.snu.ac.kr)

문의처: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이메일: [startup@snu.ac.kr](mailto:startup@snu.ac.kr)  
전화: 02-880-8984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 ☑ 창업자 경영지원 서비스

- 대상: 서울대 구성원(교원, 학생 등)으로서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
- 회계(세무), 법무, 노무 분야 지원
- 대행업체-신청자 매칭 및 창업기업 1개당 최대 150만원 한도로 지원
- 대표 연락처: 02-880-8984(창업지원단)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 창업자 경영지원 서비스

서울대학교 구성원 대상

운영기간: 2023. 5. ~ 2024. 1.

지원대상: 회계·세무, 법무, 노무 분야 실무 전문 자문

지원내용: 학교 교원 및 학생으로 예비창업자 및 대표자인 초기창업자 (주)창업지원단(2023. 5. 1. 이후 설립된 기업)에 한하여,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를 위한 '창업일반, 창업일반' 창업지원금(상위사업지원금)을 활용하여 최대 150만원(1인당)을 지원

신청방법: 창업지원단 홈페이지([startup.snu.ac.kr](http://startup.snu.ac.kr))에서 신청  
\* 최초 1회 신청(세무 또는 노무 분야)은 가능하며, 이후 추가 서비스 신청은 창업지원단으로 신청한 창업지원금 사용내역에 따라 제공되며, 동일한 분야 '서비스'를 여러 번 신청하는 서비스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원한도: 1개 기업당 150만원(1인당 포함)

문의처: 창업지원단([startup@snu.ac.kr](mailto:startup@snu.ac.kr), 02-880-8984)

서비스 지원 사항	회계·세무	법무	노무
사업비 회계처리,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회계 관련 자문 세무보고서, 세무조정장서서 작성 및 법인세 산출, 각종 신고, 기업 통폐합, 세무 대행 서비스 제공 기타 문의는 별도문의 바랍니다.	법인명칭 등기 및 사업자등록 대행 법인, 회사규정 등 법률 제정 검토 및 작성 법률행위 상담 및 검토(계약서 작성, 각종 법적 자문) 이후 행정상세 검토 및 작성 등	노무 문제 상담을 통해 노무관리 상담 및 노무자문 근로계약서 검토(노동위원회, 법원)에 따른 작성 및 검토 기타 노무 문제 상담이 필요한 사항 등	

## ✓ SNU-IR

### ● 개요

- 교내외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 촉진 및 투자유치 기회 마련을 위한 IR 자료 지원 제작 및 피칭 기회 제공

### ● 지원내용

- 투자유치교육, 맞춤형 IR 전략컨설팅, 기업별 IR자료 제작지원, 투자자 발굴 및 매칭 지원 등

### ● 운영시기: 비정기적(창업지원단 홈페이지 통해 일정 확인 필요)

### ● 문의처: 02-880-8985(창업지원단)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SNU-IR]

### IR자료제작 지원 창업기업 모집 안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사업화  
및 투자유치 기회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IR자료 컨설팅 및  
홍보 지원

**지원대상**  
창업 3년 미만 기업

**지원내용**

- 1. IR자료 제작 교육 및 컨설팅 / IR자료 번역 / 기존자료 리디자인 중 택 1
- 2. IR피칭 교육 및 교육
- 3. 기업성명회 개최

**주요일정**

- 1. 교내외 홍보 및 신청접수: 2022. 7. 8 ~ 2022. 7. 18 (월)
- 2. 공모 발표: 2022. 7. 28 (목)
- 3. IR컨설팅 및 자료제작 지원: 2022. 7월 ~ 2023. 2월
- 4. 기업성명회 개최: 2022. 10. 25 (화)

**신청방법 및 링크**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 프로그램 신청  
<https://startup.snu.ac.kr/firstApplication>

## ✓ 창업특강

-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어려움에 봉착한 창업팀 구성원
-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 일반, 시장 진출, 투자, 법률, 노무, 세무, 지식재산권 등의 다양한 주제로 창업유관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운영 중에 있음
-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학내 창업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특강 프로그램 확인 가능

2023년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 창업특강 (창업 일반, 시장 진출) 수강생 모집

**신청기간**  
7월 6, 7, 8, 9일 (월~목)  
신청처: 창업지원단

**대상**  
대학원 및 창업지원단 대상  
신청방법: 7월 6일  
문의: 창업지원단 (02-880-8985)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지원금 5000원 (현금) (02-880-8985)

**교육내용**  
1. 창업 일반: 7월 6, 7, 8, 9일 (월~목) 15:30 ~ 17:30  
2. 시장 진출: 7월 10, 11, 12, 13일 (금~월) 15:30 ~ 17:30

**교육장소**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409호 (409호)

**교육시간**  
7월 6, 7, 8, 9일 (월~목) 15:30 ~ 17:30

**교육대상**  
대학원 및 창업지원단 대상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지원금 5000원 (현금) (02-880-8985)

구분	일시	주제	강사
창업 일반	7월 6, 7, 8, 9일 (월~목) 15:30 ~ 17:30	창업 일반: 7월 6, 7, 8, 9일 (월~목) 15:30 ~ 17:30	창업지원단
시장 진출	7월 10, 11, 12, 13일 (금~월) 15:30 ~ 17:30	시장 진출: 7월 10, 11, 12, 13일 (금~월) 15:30 ~ 17:30	창업지원단

문의: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02-880-8985)

## ✔ (창업경진대회) 비 더 로켓, 더 비기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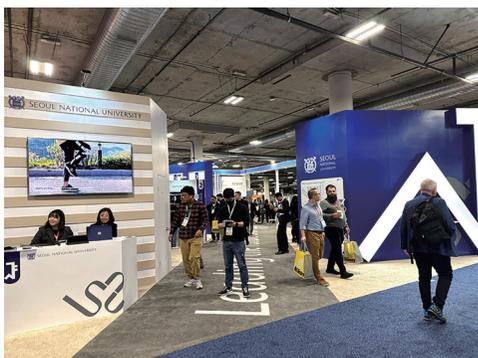
- 대상: 학내외 대상(비 더 로켓) 및 학내 구성원(더 비기닝) 예비, 초기 창업자(격년제 운영)
- 지원 사항
  - 본선 진출 기업(팀)의 사업 아이템 고도화를 위한 2~3개월 간의 액셀러레이팅(KT, 카카오벤처스, IBK 기업은행, 소풍벤처스, 액트너랩 등과 1대1 매칭 기회 부여) 제공
  - 런칭데이(데모데이)를 통한 최종발표 후 상금을 수여하고 서울대기술지주회사 투자 검토 및 창업지원단, 관악S밸리 창업공간 우선 입주기회를 제공
- 운영시기: 공고(7월) → 본선 진출 기업 선정(8월) → 액셀러레이팅(9월~10월) → 런칭데이(데모데이, 11월)
- 대표 연락처: 02-880-8984(창업지원단)



## ✔ 동문창업네트워크

- 개요
  - 서울대 동문창업네트워크(SAEN: SNU Alumni Entrepreneur Network)를 개최하여 본교의 창업 활성화 노력을 소개 및 동문 창업자 교류의 장 마련
- 운영 프로그램
  - 동문창업네트워크 개최
    - (기조연설) 성공 창업 동문의 창업 관련 기조연설 진행
    - (비즈니스 피칭) 창업교원 및 본교 학생 창업기업의 IR 피칭
    - (기업전시) 동문창업기업 전시공간 설치 및 홍보 진행
    - (만찬 및 네트워킹) 저녁 만찬 및 창업유관 동문간 네트워킹 제공
  - 동문창업자 DB 구축

- 동문 창업자, VC 등 서울대학교 유관 창업분야 종사자들의 DB 구축
- 동문창업네트워크 뉴스레터 발송 및 행사 초청과 홍보 등에 활용
- 동문창업네트워크 뉴스레터 발간(분기별)
  - 본교 출신 창업자 및 창업기업 우수사례 소개
  - 서울대 창업 기관에서 지원하는 각종 행사 프로그램 홍보
- 운영시기: 본행사(10~11월), 뉴스레터 발간(분기별)
- 문의처: 02-880-8985(창업지원단)



###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 대상: 연구실(실험실)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실험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연구실
- 실험실 창업 사전기획(BM 모델 수립 및 고도화) 및 연구개발비 지원, 실험실 동아리 활동 및 대학원생 창업 강좌 지원 등 실험실 전문분야별 성장 지원과 맞춤형 특화 교육 운영
- 대표 연락처: 02-880-2225(산학협력단 기술창업부)

### ✔ 캠퍼스타운 사업

- 대상: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자(팀)
- 창업입주공간(대학동, 낙성대) 및 입주기업 대상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크 기회 제공
- 대표 연락처: 070-7791-4632(캠퍼스타운사업단)

###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 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0년 이내 딥테크 기업
- 시스템반도체 사업지원: 사업화자금 지원, IP 및 EDA, MPW 지원, RnD 자금지원 및 멘토링 등
- 대표 연락처: 02-880-4742(시스템반도체산업진흥센터)

###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 대상: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BM고도화, 시제품 제작, 후속연계 등 창업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상담창구 등을 통한 창업 전반에 대한 지원
- 대표 연락처: 031-5176-2236(시흥캠퍼스본부 전략기획실)

## ✔ 창업스타트 패키지 지원사업

- 대상: 시흥캠퍼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딥테크 분야(레드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사업화 자금, 창업 특강 및 네트워킹 등 지원
- 대표 연락처: 031-5176-2235(시흥캠퍼스본부 전략기획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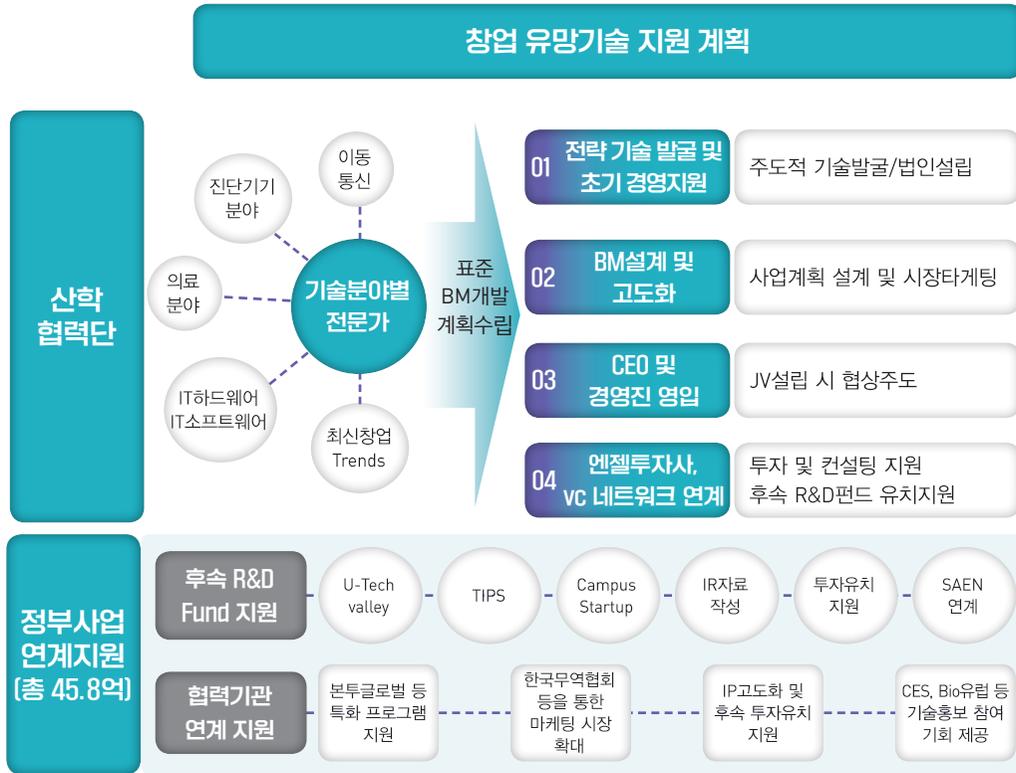
## ✔ BK21 대학원혁신사업

- 대상: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 시흥캠퍼스 고유 프로그램인 LAUNCHPAD 프로그램을 통해 IGNITE특강-캠프-멘토링, BM고도화, IR피치덱, 1:1 멘토링과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후속 지원 등 창업 프로그램 운영하여 우수 창업팀 발굴 및 육성
- 대표 연락처: 031-5176-2218(시흥캠퍼스본부 전략기획실)

## ✔ 기획창업제도 통한 창업유망기술의 사업화 지원

- 개요
    - 창업유망기술의 선제적 발굴과 각종 지원을 통한 우수 창업기업 설립 및 기부주식 확보
  - 지원대상: 교원 및 대학(원)생
  - 지원사항
    - 경영, 투자 유치 등 법인설립부터 기업성장지원
    - 학내 절차(창업승인, 겸직, 임대계약 등) 행정 지원
  - 신청절차
    1. 발명상담 및 창업상담 진행
    2. 기획창업 신청서 제출
    3. 기획창업 평가위원회 심의
    4. 산학협력단 기획창업 프로그램 지원
- ※ 안내부서: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실 전략사업부 ☎ 02-880-7892

## 기획창업 지원 계획



### ✓ 글로벌 진출지원 프로그램

#### • 개요

- 본교 우수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성과 창출과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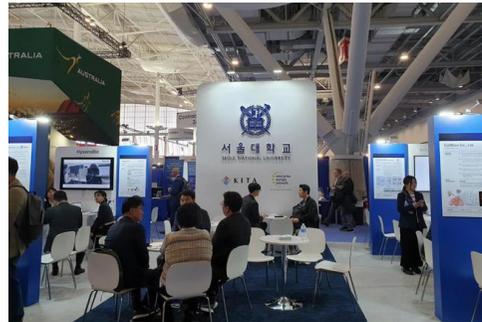
#### • 지원대상: 교원창업기업 등

#### •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 전기, 전자, 기계, IT 분야 우수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 대학지원사항: 부스사용 임대료, 혁신상 신청 비용 및 컨설팅, 홍보지원 등
- 신청기간: 5~6월 중 / 개최 시기: 1월
- 안내부서: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실 기술창업부(☎ 02-880-2223)

● BIOUSA

- 바이오, 신약, 의료기술 분야 우수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 대학지원사항: 부스 설치 및 운영 비용, 전시공간 임대비용, 파트너링 ID, 입장권, 마케팅 및 홍보 지원
- 안내부서: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실 전략사업부 ☎ 02-880-2028



✓ 관악S밸리 사업

● 개요

- 학(學)·관(官)·민(民)의 협력모델인 ‘관악S밸리’ 사업으로 대학동, 낙성대 일대 16개의 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하고 120개 이상의 기업과 1,000명 이상의 구성원이 입주(공간 계속 확충 예정)
- 학구성원이 입주(공간 계속 확충 예정)
- ※ 참여기관: 서울대, 서울시, 관악구, KT, KB, 우리금융 등

● 지원사항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지구내 창업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 지구 내 벤처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재산세·취득세 37.5% 감면
  - 지구 내 기업 및 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면제
  - 기반시설 확충, 판로개척·마케팅 등 영업활동 지원 등

-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 및 민간의 창업지원 노하우
  - 데모데이를 통한 창업기업 검증 및 투자 기회 제공
  - 페스티벌 운영을 통한 창업문화 확산 및 각종 사업화 지원
- 창업공간 제공(일반형, 기관추천형)

※ 안내부서: 창업지원단 ☎ 02-880-8985



## 별첨

# 창업 지원 주요 사이트 모음

### 학내

- 창업지원단: <https://startup.snu.ac.kr>
- 산학협력단: <https://snurnd.snu.ac.kr>
-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 및 기술홍보 안내: <https://techbiz.snu.ac.kr>
- 캠퍼스타운사업단: <https://campustown.snu.ac.kr>
- 서울대기술지주회사: <https://snuholdings.com>
- SNU공학컨설팅센터: <https://snuecc.snu.ac.kr>
- 시흥캠퍼스 창업보육센터: <https://siheungstartup.snu.ac.kr>
- 유전공학특화창업보육센터: <https://imbgbi.snu.ac.kr>
- 농생명과학창업지원센터: <https://agbio.snu.ac.kr>
- 덴탈메디케어창업보육센터: <https://dentistry.snu.ac.kr>
- 생명공학공동연구원(<https://bio-max.snu.ac.kr>)

### 학외

- 중소벤처기업부: <https://mss.go.kr>
- 창업진흥원: <https://kised.or.kr>
- 창업지원포털: <https://k-startup.go.kr>
-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https://jointips.or.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s://kosmes.or.kr>
- 기술보증기금: <https://kibo.or.kr>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https://smes.go.kr/venturein>
-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 <https://smes.go.kr/binet>
- 창조경제혁신센터: <https://ccei.creativekorea.or.kr>
-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https://9988law.com/startlaw>
-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https://k-ac.or.kr>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https://kvca.or.kr>
- 벤처투자종합포털: <https://vcs.go.kr>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https://koef.or.kr>